



농막, 농촌체류형쉼터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 고시

[시행 2025. 8. 21.] [농업정책관고시 제2025-86호, 2025. 8. 21., 제정]

농림축산식품부(농지과), 044-201-1734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농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의2(농막 등의 범위)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의 주차공간 및 데크 면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) 「농지법 시행규칙」제3조의2(농막 등의 범위)제1호다목 및 제3조의2제1호의2호다목에 따른 주차공간 및 데크의 면적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넘어설 수 없다

1. 주차공간 면적 : 13.5㎡(1면)
2. 데크 면적 :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.5미터를 곱한 값

부칙 <제2025-86호,2025.8.21.>

이 고시는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